

사천시청소년통행금지·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

(의안번호 제43호 99. 9. 11)

총무위원회
1999. 9. 20

1. 심사경과

- 가. 1999. 9. 11 사천시장 제출
- 나. 1999. 9. 13 총무위원회 회부
- 다. 1999. 9. 15 제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

2. 제안설명 요지(사회과장 김영태)

가. 제안이유

청소년 유해 요인들이 날로 증가되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·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(1) 청소년 통행금지·제한구역 지정기준 및 대상
- (2)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
- (3) 지정절차
- (4) 지정해제
- (5)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
- (6)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성호영)

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이 지역에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접근을 방지하여 탈선과 범죄를 예방,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검토결과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4. 결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6. 소수의견 : 없음